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32호 2018. 7. 20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시

○남원시 고시 제2018- 8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고시(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) ----- 1

공고

○남원시 공고 제2018- 1205호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공고 ----- 4

○남원시 공고 제2018- 1213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 공고 ----- 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18-86호

남원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고시 (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)

남원시 고시 제2018-80호(2018.6.29.)에 따라 고시된 남원 예촌마당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사업에 대한 누락사항(물건조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(변경)고시합니다.

남 원 시 장

2018년 7월 20일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시설)

나. 사업의 명칭 :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

2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
가. 위 치 : 남원시 월매길 12번지

나. 사업규모

구분	조성계획면적(m ²)	비고
계	3,380	
물레방아갤러리	1,118	
사랑이야기관	300	리마인드웨딩 체험실, 여성친화공간
노닐마당	650	바닥분수, 그늘막쉼터
이벤트존	300	사랑이야기관과 연계한 스몰웨딩, 프로포즈 존
캐릭터존	250	국악기캐릭터 설치, 트리아트 포토존
약속정원 및 조경	762	언약의 퍼걸러, 사랑의 자물쇠 담장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남원시장(관광과)

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

○ 토지조서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면 적(㎡)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또는 명칭	주소	성명또는명칭	주소	권리의종류 및 내용	
	합계			1,969	1,762						
1	남원시 쌍교동	255	도	13,684	68	국(건설부)	-				
2	남원시 쌍교동	260	대	1,053	1,053	남원시	-				
3	남원시 쌍교동	263	대	4	4	남원시	-				
4	남원시 쌍교동	264	도	73	73	국(건설부)	-				
5	남원시 쌍교동	265	대	203	203	남원시	-				
6	남원시 쌍교동	266	대	413	413	소**	남원시 쌍교동 2**				
7	남원시 쌍교동	267	대	162	162	남원시	-				
8	남원시 쌍교동	268	대	3	3	윤**	남원읍 천거리 *	삼**** 주식회사	수원시 매탄동 416	근저당권	
9	남원시 쌍교동	269	대	50	50	김**	남원시 쌍교동 2**				
10	남원시 쌍교동	270	대	13	13	김**	"				
11	남원시 쌍교동	271	대	10	10	김**	"				
12	남원시 쌍교동	272	대	7	7	김**	"				
13	남원시 쌍교동	282	대	364	364	김**	남원시 월락동 부영** ***동****호				
14	남원시 쌍교동	284	대	46	46	남원시	-				
15	남원시 쌍교동	288	대	251	251	남원시	-				
16	남원시 쌍교동	289	대	180	180	남원시	-				
17	남원시 쌍교동	290	대	195	195	남원시	-				
18	남원시 쌍교동	291	대	106	106	남원시	-				
19	남원시 쌍교동	292	대	17	17	남원시	-				
20	남원시 쌍교동	293	대	111	111	남원시	-				
21	남원시 쌍교동	293-1	도	8	8	남원시	-				
22	남원시 쌍교동	342	도	545	43	국(건설부)	-				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- 쌍교동 266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물 건				소유자		비 고
				물건명	구조 및 규격	면입수량	단위	성명또는 명칭	주소	
1.	쌍교동	266	대	주택	목조/기와 (강판지붕)	51.98	m ²	소**	전북 남원시 쌍교동 2**	
				주택	시멘블럭조/세와	72.45	m ²			
				까대기 (화장실및 보일러실)	목재/강판	37.28	m ²			
				가추	목조/슬레트	5.44	m ²			
				가추	목조/함석	8.00	m ²			
				화장실	블럭/슬라브	3.68	m ²			
				까대기(창 고)	블럭/슬레트	8.19	m ²			
				욕실	블럭/슬레트	3.72	m ²			
				바닥	보도블럭	187.09	m ²			
				대문1	철재	3.42	m ²			
				대문2	철재	1.35	m ²			
				수도간		1	식			
				창독대		1	식			
				담장	브럭	15	m			
				화단1	블럭	9.79	m ²			
				화단2	블럭/돌	25.38	m ²			
				철쭉		2	주			
				보리수		2	주			
				대추		3	주			
				오렌지수		1	주			
				등백		3	주			
사철		2	주							
라일락		1	주							
목단		1	주							
감나무		1	주							
박태기		1	주							
석류		1	주							
동산이전비		1	식							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- 쌍교동 269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물 건				소유자		비 고
				물건명	구조 및 규격	면입수량	단위	성명또는 명칭	주소	
2	쌍교동	269	대	주택	목조/시멘기와	44.59	m ²	김**	전북 남원시 쌍교동 2**	
				창고	블럭/슬라브 (계단포함)	3.30	m ²			
				가추	목조/슬레트	6.00	m ²			
				바닥	콘크리트	26.11	m ²			
				대문	철재	3.00	m ²			
				담장	브럭	15	m ²			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- 쌍교동 282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물 건				소유자		비 고
				물건명	구조 및 규격	면입수량	단위	성명또는 명칭	주소	
4	쌍교동	282	대	가추	목조/슬레트	10.44	m ²	김** 또는 강**	전북 남원시 오들1길 ** 또는 전북 남원시 쌍교동 2**	
				홀	철파이프하우스	44.64	m ²			
				화장실	목조슬레트	2.76	m ²			
				담장	함석	22.30	m ²			
				관정(가정용)		1.00	식			
				보리수나무		1.00	주			

공고 제2018-1205호

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18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(개정·폐지)하고자 하는 이유

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,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 및 감면규정 삭제(안 제5조제3항, 안 제7조제10호)
- 나.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사항 반영 (안 별표)
- 다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남원시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 55766 /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, 남원시보건소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7928), 직접방문, 컴퓨터 통신 (bank@korea.kr)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4. 기타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담당자 최용재(전화 : 063-620-791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 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07. .
 제출자 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 : 보건지원과장

1. 개정이유

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,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「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조항 및 감면규정 삭제 (안 제5조제3항, 안 제7조제10호)
- 나.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사항 반영 (안 별표)
- 다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8. 07. 18. ~ 2018. 08. 07.(20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라”로,
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을 “「의료급여법」”으로, “의한”
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기타 수가)”를 “(그 밖의 수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거”를
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
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등을 요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등이
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3호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2호의 규정에
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”를 “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
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“허위사실에 의하여”를 “허위사실로”로, “자에 대하여는”을 “사람에게
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(제6조 관련)

구 분	기 준	수수료	비 고
1. 건강진단서	1통	500원	
2. 근로자 건강진단서	1통	500원	
3. 채용 신체검사서	1통	500원	
4. 일반진단서	1통	500원	
5. 특별진단서	1통	2,000원	요양신청용, 병사용, 상해진단용
6. 사체검안서	1통	5,000원	
7. 성별 및 연령감정서	1통	2,000원	
8. 건강진단결과서	1통		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 따라 징수
9. 사망진단서	1통	500원	
10. 출생,사산 또는 사태 증명 서	1통	500원	
11.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 급	1통	300원	
12. 제증명 1통 초과 추가발 급	1통	100원	당일 발급 시에 한함.
13. 운전면허적성검사	1통	500원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필요한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진료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진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.</p>	<p>제2조(진료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에 따른 ----- -----.</p>
<p>제4조(타 법령에 의한 수가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</p>	<p>제4조(타 법령에 의한 수가) 「의료급여법」 ----- 따른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타 수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유료 예방접종비는약품최근구입가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거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체력측정 수수료</p>	<p>제5조(그 밖의 수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.

제6조(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)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검진 및 각종 검사)등을 요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.

제7조(진료비·수수료 감면)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1. · 2. (생 략)
- 3.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
- 4. · 5. (생 략)
- 6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진료

제6조(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) ① -----

----- 따라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-----

-----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
-----.

제7조(진료비·수수료 감면) ---
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감염병 -----
- 4. · 5. (현행과 같음)
- 6. -----
-----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-----

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
담금

7. (생 략)

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기
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
종행사시 의료지원 다만, 응
급투약에 한한다.

9. (생 략)

10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0
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
이상 노인, 장애인, 「국민기
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
자의 기초체력측정 수수료

제9조(추징) 허위사실에 의하여
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
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 그 밖
의 -----

-----.

9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9조(추징) 허위사실로 -----
----- 사람에게는
-----.

제10조(시행규칙) -----
필요한 -----
-----.

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남원시 공고 제2018-1213호

『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19일

남 원 시 장

**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“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”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규정 (안 제20조)

-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법령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- (우)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) 남원시청 환경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전화(063-620-6243), 팩스(063-620-6747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(☎ 063-620-62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07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환 경 과 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“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”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규정 (안 제20조)

-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법령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 관리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7. . ~ 2018. 8. 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)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법령
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)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,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·령·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)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는 법령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